



FTA 100% 활용하기

CBAM은 글로벌 기후 통상규제의 출발 신호

이상준 | 국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부교수

E REPORT

CBAM은 글로벌 기후 통상규제의 출발 신호



이상준
국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부교수



1 구체화되고 있는 글로벌 기후 통상규제

우리나라는 수출을 통해 성장해 온 개방경제 국가이다. 개방경제를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한다는 면에서 진취성을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 글로벌 환경 변화에 취약하다는 약점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대외환경의 변화를 날카롭게 인식하고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이 개방경제가 가진 취약성을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하는 길이다.

최근 대외적인 통상환경의 변화는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길을 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의 핵심축으로 기후·환경적 요소가 글로벌 무역 규제로 구체화되어 도래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러한 경향의 효시로 EU에서 탄소국경조정제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가 올해 10월부터 시행된다.

CBAM은 앞으로 기후환경 관련 글로벌 무역 규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에 CBAM에 대한 이해는 앞으로 기후변화 문제가 이끄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를 명확히 인식하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된다.

EU CBAM은 2021년 7월 입법안이 발표되면서 시행이 예고되었으나 실제 입법이 이루어 지기까지는 거의 2년에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었다.

CBAM은 오랜 논의 끝에 2022년 12월 18월 집행위, 이사회, 의회가 규제안에 합의하면서 도입이 확실시되었으며 2023년 5월 10일 이사회, 유럽의회가 규제안을 승인하고 5월 16일 관보에 게재되어 공식 발효되었다.

2 CBAM은 어떻게 시행되는가?

CBAM에 대한 개략적 이해를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통하여 CBAM의 시행방식을 간단히 살펴보자.

첫째, CBAM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 CBAM은 법률에 명시된 대상목을 수입하는 EU의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흔히 CBAM이 수출국의 업체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CBAM은 EU의 역내법으로 EU 역외 수출업체가 대상이 아니고 EU의 수입업자가 규제 대상이다.

둘째, CBAM은 어떤 방식으로 시행되는가? CBAM은 EU 수입업자가 제품의 수입에 따라 EU 배출권(EUA) 가격에 기반한 CBAM 인증서(certificate)를 구매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사실 이 방식은 세금을 납부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인증서를 구매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금전적 부담을 진다는 것과 이 가격이 변동성이 있다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셋째, 납부하는 인증서의 수량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이 질문은 무엇을 기준으로 조정하는 것인지의 문제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제품에 내재된 배출량(embedded emissions)이라는 기준이 등장한다. 수입 제품에 내재된 배출량을 기준으로 수입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CBAM 인증서 수량이 결정되고 수입업자는 이 수량만큼 CBAM 인증서를 구매 해서 제출해야 한다.

즉, 제품에 내재된 배출량이 많으면 구매해야 되는 인증서 수량이 비례적으로 증가하며 만약 내재된 배출량이 영(零)인 무탄소 제품이라면 전혀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다.

넷째, 원산지에서 탄소가격을 납부한 경우 어떻게 조정하는가? 이 질문은 원산지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탄소가격을 이미 납부했다면 CBAM의 부담이 이중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EU CBAM은 이중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원산지에서 탄소가격을 납부한 경우 상응하는 물량 만큼 인증서 구매량을 차감해 준다.

[표 1] CBAM 시행방식

방식	내용
누가 CBAM의 대상인가?	적용 대상 품목을 수입하는 EU 수입업자(EU importer)
어떻게 시행하는가?	수입업자는 CBAM 인증서(certificates)를 구매 (인증서 가격은 주간 EUA 가격에 기반)
무엇을 기준으로 조정하는가?	수입업자는 수입 제품에 내재된(embedded) 배출량을 보고 → 제품 내재 배출량 기준 CBAM 인증서 구매량 결정 → CBAM 인증서를 구매하여 제출(surrender)
원산지에서 탄소가격을 납부한 경우	제품 생산 시 납부한 원산지 탄소가격은 상응량을 차감

출처: European Commission (2023) 참고하여 저자 정리



3 CBAM의 핵심 사항은 무엇인가?

CBAM의 대상 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의 6개 품목이다. 이 중 우선 우리나라 기업이 직접적 영향권에 놓이게 되는 품목은 철강과 알루미늄이다.

철강과 알루미늄은 각각 對EU 수출이 2021년 기준 43억 불, 5억 불 수준으로 향후 CBAM이 시행되면 부담이 발생할 것이다. 나머지 품목은 EU와 유의미한 수준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품목이다.

CBAM의 시행은 2026년 1월부터 본격화되지만, 올해 10월부터 당장 시범운영이 시작된다. 이 기간에 실제 금전적 부담은 하지 않으나 배출량의 보고 의무는 존재하기 때문에 준비가 필요하다.

EU는 CBAM의 시행과 더불어 그간 EU ETS에서 탄소누출 방지를 위해 적용하던 무상 할당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일정을 확정하였다. CBAM을 통해 탄소누출 대응을 대체하면서 기존의 수단인 무상할당은 축소하고, 그로써 관련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촉진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2026년에 시작하여 2033년까지 점차 유상할당의 비중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이행 된다.

[표 2] CBAM 핵심 요소

구 분	CBAM Regulation
적용 품목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6개 품목)
시행시기	2026년 1월 2년 3개월 시범운영(2023. 10.~2025. 12.)
CBAM 적용 품목 EU ETS 무상할당	2026년 개시 2033년 완전 폐지
적용 배출유형	직접배출 + 간접배출(특정조건 下)
기타	중앙등록처 신설

출처: European Commission (2023) 참고하여 저자 정리

CBAM이 적용되는 온실가스 배출의 유형 면에서 CBAM은 우선 직접배출을 대상으로 하되 특정 조건에 따라 간접배출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아직 간접배출이 배출량 보고에 포함되는 조건은 자세히 공표된 바가 없으므로 향후 이행법안이나 지침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CBAM은 우리나라 수출에 큰 영향을 줄 것인가?

CBAM이 우리나라 수출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지 영향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CBAM의 시행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이 매년 부담해야 되는 CBAM 인증서 제출량에 따른 재무적 부담과 더불어 수출국 간에 가격경쟁력 수출 제품군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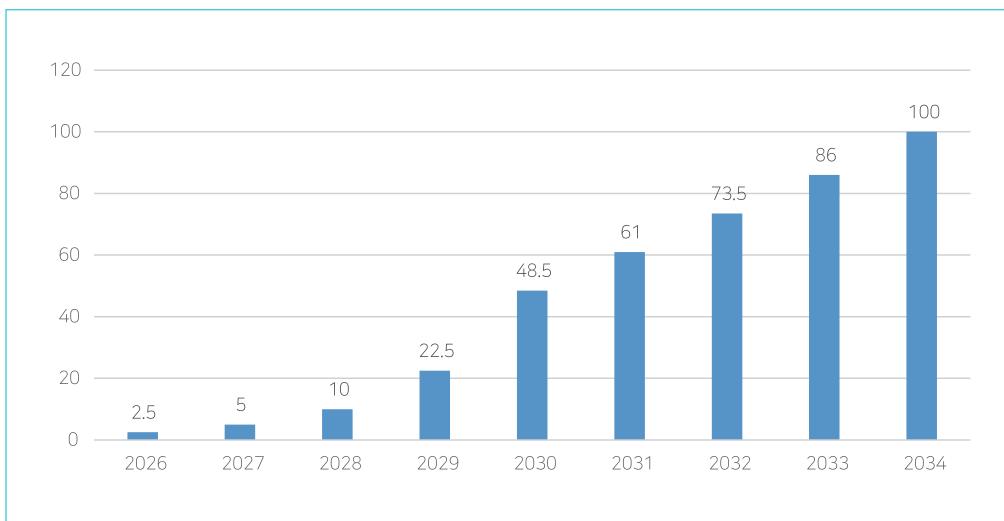
개략적인 추정이 가능한 CBAM 인증서 부담 수준을 기준으로 CBAM의 영향을 살펴보면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확정된 CBAM 규제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철강 기업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필자가 추정해본 결과 본격 시행 초기인 2026년 약 800억 원 가량의 CBAM 인증서 구매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이다.

그러나, CBAM 부담은 EU가 무상할당을 축소하면서 증가한다는 데에 주목해야 한다. 필자의 분석에 따르면 CBAM 인증서 부담은 2030년 경에는 약 3,000억 원, 2034년에는 5,500억 원 수준으로 증가한다.¹

개념적으로 무상할당 비중은 실효적으로 탄소 가격을 부담하지 않는 수준을 의미하므로 다음의 그림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무상할당이 축소되면 해외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CBAM의 부담 수준도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¹ 이는 현재 EU 배출권 가격을 기준으로 분석해 본 결과로 향후 EU 배출권 가격이 상승하면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

[그림 1] CBAM의 도입에 따른 EU ETS 무상할당 촉소

출처: European Commission (2022) 참고하여 저자 작성





5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앞의 [표 1]에서 제시된 것처럼 기업이 부담하는 CBAM 인증서 수량은 제품 내재 배출량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므로 수출기업은 제품 내재 배출량 산정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구나 실제 배출량에 대한 충실한 보고가 이행되지 않으면 불리한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우선 제품 내재 배출량 산정 체계를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나 목표관리제 등의 규제하에 있는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여 검증 등을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배출권거래제 등에서의 온실가스 산정과 CBAM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산정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배출권거래제는 설비나 사업장 단위의 배출량을 산정하면 되지만 CBAM은 제품 단위의 배출량 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제품 단위의 산정은 기존 방식에 비해 훨씬 고도화된 체계를 갖추어야 가능하다.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경험이 축적되어야 순조롭게 대응이 가능할 것임은 물론이다.

궁극적으로 우선 EU에 수출하는 제품군을 시작으로 한 저탄소 제품의 라인업을 구축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CBAM과 같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기반한 무역 규제는 본질적으로 저탄소 제품을 우대하는 질서를 구축하는 것을 의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결정하는 요소는 더 이상 가격과 품질과 같은 전통적인 요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CBAM은 저탄소, 고효율 제품 등 기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품이 우대받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의 신호탄이 아닐까 한다.